

企業內模範特許管理체제의 設計

◁ 調 査 部 ▷

一 承 前 一

⑦ 出願에서 權利消滅까지의 事務節次概要 (日本의 경우)

1) 出願에서 登錄까지의 flow와 그 過程에서 必要로 하는 費用

① 出 願

가) 郵送을 한 경우에는 登記郵便 受領證이나 通信日字印으로 確認되면 郵遞局에 낸 日時에 出願을 한 것으로 看做된다.

나) 出願은 本人이 아닌 代理人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다) 出願時에 納入하는 手數料는 第 1—5圖에 圖示한 바와 같다. 즉, 特許의 경우에는 發明의 項數와는 관계없이 一律적으로 5,400圓이다.

라) 出願한 때부터 1年半이 經過하면 自動적으로 公報에 의하여 公開된다.

② 出審願査의 請求

가) 出審願査의 請求는 特許에 있어서는 出願을 한 때부터 7年間(實用新案은 4年間)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위의 期間中에 請求를 하지 않고 放置해 두면 그 出願은 取下된 것으로 看做된다.

나) 出願의 分割 또는 出願의 變更을 하였을 경우 元來의 出願에 대하여 審査請求를 하였다 할지라도 分轄 또는 變更後의 出願에 대하여 別途의 審査請求를 하지 않는 限 이를 審査하지 않는다.

다) 審査는 出願人自身은 勿論 第3者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第3者가 그 審査節次의 當事者가 될 수는 없다.

라) 審査請求에는 費用이 든다. 이에 대하여는 第 1—5圖를 參照할 것.

③ 意見書, 節次補正書의 提出

가) 出願한 날로부터 1年 3個月까지는 時期的 制限은 없다.

나) 그 후에 있어서는 出願審査의 請求時에 拒絶理由通知에 대한 意見書의 提出期間中에 限定된다.

④ 特許異議의 申請

가) 公告日로부터 2個月以內에는 누구를 莫論하고 特許異議申請書에 刑行物등 必要한 證據를 添附하여 特許廳에 提出하고 그 出願을 拒絶하여야 한다는 것을 申請할 수 있다.

나) 異議申請이 있을 경우 出願人에게 그 副本이 送付된다.

다) 이에 대하여 出願人은 答辯書를 作成·提出하여 異議申請에 의한 出願의 拒絶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⑤ 特許料의 納入

가) 出願公告日로부터 15年동안 各年에 대하여 特許料를 納入하여야 한다.

나) 實用新案의 경우에는 10年이다.

2) PCT出願節次

a) PCT(Patent Corporation Treaty)의 意義

世界的인 特許出願增加 및 多數國出願에 의한 各國特許廳의 重複된 審査에 대하여 出願人및 特許廳의 負擔을 輕減하고자 創設된 機關이다.

從來에는 外國에 出願을 하려면 自國에 出願한 發明을 根據로 하여 各國別로 出願을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出願人은 煩雜한 外國出願을 되풀이 해야 하였고 特許廳間에도 重複된 審査가 問題로 되어 있었다.

b) PCT出願의 flow chart

c) 節次의 概要

① 出願人은 特許權을 取得하고자 하는 나라를 指定하고 PCT에 의한 國際出願임을 明示하여 日本의 特許廳에 所定의 節次에 따라 願書, 明細書를 提出한다.

② 出願書가 不備한 경우에는 特許廳으로부터 補正通知를 받게 된다. 그 때에는 補正書를 提出한다.

③ 出願書類는 國際事務局에 보내지는 한편 國際

□ 前進的特許管理시스템 開發을 위한 (5)

第 1-6 圖 PCT出願節次의 Flow Chart

註) 番號는 節次順序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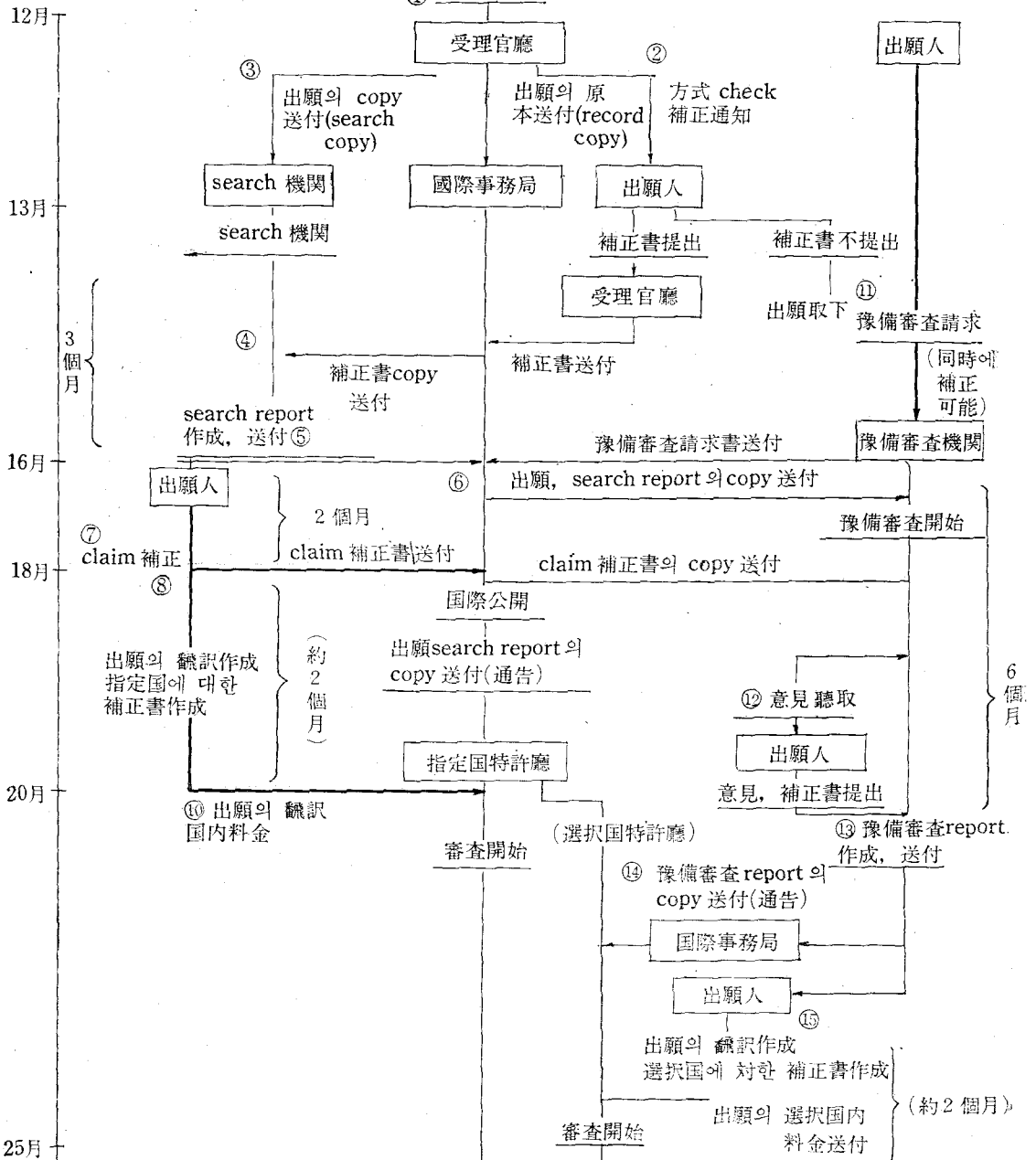
優先日
부터
起算

(PCT 手續說明圖)

phase (PCT 第 1 章)

phase II (PCT 第 2 章)

(出願人이 豫備審査를 請求한 경우)



□ 前進的特許管理시스템 開發을 위한 (5).....

search 機關에도 보내지며 여기서 search를 開始한다.

- ④ Search는 原則的으로 3個月以內에 行하여진다.
- ⑤ 그 結果 Search report가 作成되어 出願人과 國際事務局에 보내진다.
- ⑥ 國際事務局은 原則的으로 優先日(優先權主張日 또는 優先權主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出願日)부터 18個月直後에 出願의 國際公開를 公報에 의해서 하며 出願書類와 search report의 copy를 指定國에 送付한다.
- ⑦ 出願人은 search report를 檢討하여 出願의 取下, 續行, 補正 등을 決定하게 되며 claim의 補正이 必要할 때에는 2個月以內에 事務局에 送付한다.
- ⑧ 出願人은 search report를 받은후 優先日로부터 原則的으로 20個月後에 指定國特許廳에 出願의 翻譯, 所定の 國內料金등을 提出한다. 이때 明細書, claim의 補正을 할 수 있다.
- ⑨ 指定國의 特許廳에서는 國際事務局으로부터 보내온 search report와 出願人에게서 提出되어 翻譯된 出願에 의거하여 各國의 國內法에 따라 審査를 開始한다.
- ⑩ 出願人의 나라 및 出願을 하고자 하는 對象國이 PCT의 豫備審査制度를 採用하고 있는 경우에는 PCT出願과 同時 또는 그 以後에 出願人은 國際豫備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 ⑪ 豫備審査는 上記한 search report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데 이때 出願人에게는 意見書, 補正書提出의 機會가 주어진다. 豫備審査의 期間은 原則的으로 6個月이다.
- ⑫ 이 豫備審査報告書에 의하여 出願人은 自己의 出願에 關聯된 發明의 特許性을 判斷할 수 있으며 特許를 取得할 可能性이 없는 出願은 取下할 수 있다.
- ⑬ 豫備審査報告書가 補正書와 함께 出願人 및 選擇國에 送付된다.
- ⑭ 出願人은 豫備審査報告書를 받은 後 選擇國에 出願書類의 翻譯 및 國內料金を 提出한다.
- ⑮ 審査는 그 나라의 國內法에 따라 行하여진다.

3) 出願에서 權利消滅까지의 節次(第 1-7圖를 參照할 것)

그림중의 數字는 關聯된 特許法의 條文을 나타낸 것이다.

4) 補正이 可能한 時期와 補正許容範圍 (第 1-8 圖를 參照할 것)

a) 明細書 및 圖面의 補正

出願人이 發明이라고 認識하고 明細書 특히 特許請求의 範圍에 記載한 것이 그 후의 調査 또는 審査官의 審査에 의하여 判明된 出願前의 技術과의 關係로 말미암아 그대로는 特許를 할 수 없다고 判斷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特許法에서는 어떤 制限下에 出願後의 補正을 認定하고 있다.

b) 補正이 可能한 時期

第 1-8圖의 굵은 線의 時期에는 어떤 制限下에 補正을 할 수 있다.

c) 補正이 可能한 範圍

가) 出願當初의 明細書라든가 圖面에 記載한 發明의 要旨를 變更해버리는 따위의 補正은 許容되지 않으나 當初에 記載한 範圍內에서 請求의 範圍를 擴張 또는 減縮하는 變更은 할 수가 있다.

나) 未完成의 것을 出願後의 補正에 의하여 完成하는 것은 勿論 許容되지 않는다.

補正이 可能한 範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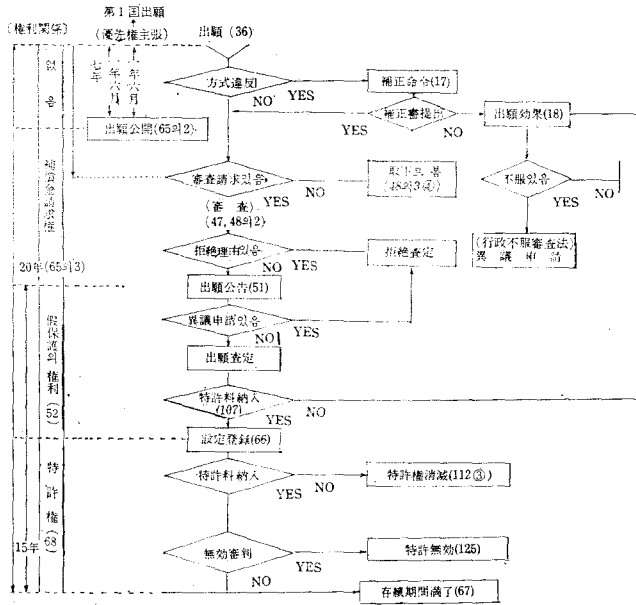
補正이 許容되는 範圍	補正이 制限에 違反된다고 判斷된 時期와 그에 대한 措置				
出願	<table border="1"> <tr> <td>審査段階에서 違反된다고 認定되었을 경우</td> <td>特許後에 違反이라고 認定된 경우</td> </tr> <tr> <td>出願當初의 明細書 圖面에 記載한 範圍內에 特許請求의 範圍를 增減變更할 수 있다.</td> <td>出願日이 補正書의 提出日까지 늦춰진다.</td> </tr> </table>	審査段階에서 違反된다고 認定되었을 경우	特許後에 違反이라고 認定된 경우	出願當初의 明細書 圖面에 記載한 範圍內에 特許請求의 範圍를 增減變更할 수 있다.	出願日이 補正書의 提出日까지 늦춰진다.
審査段階에서 違反된다고 認定되었을 경우	特許後에 違反이라고 認定된 경우				
出願當初의 明細書 圖面에 記載한 範圍內에 特許請求의 範圍를 增減變更할 수 있다.	出願日이 補正書의 提出日까지 늦춰진다.				
出願公告 決定 謄本送達	<table border="1"> <tr> <td>補正却下(이 却下에 대하여는 不服申請도 할 수 없다.)</td> <td>그 補正은 없었던 것으로 看做된다.</td> </tr> </table>	補正却下(이 却下에 대하여는 不服申請도 할 수 없다.)	그 補正은 없었던 것으로 看做된다.		
補正却下(이 却下에 대하여는 不服申請도 할 수 없다.)	그 補正은 없었던 것으로 看做된다.				
出願公告 特許請求 範圍의 減縮, 誤訂 特許査定					

5) 第3者가 出願등에 關與할 수 있는 경우 第1-9圖에 나타낸 바와 같이 4가지 경우가 있다.

① 出願公開後에 있어서 出願審査의 請求를 할 수 있다.

② 出願公開後 審査請求의 有無와는 關係없이 審査에 관한 情報의 提供을 할 수 있다.

出願에서 權利消滅까지의 節次



補正이 可能な 時期

